

제353회 임시회
2017. 01. 18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1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01월 06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01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발굴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교류·협력 및 국가 정책 대응 필요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 치 : 충청북도 내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
- 수탁기관 :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사 업 비 : 5.1억원 정도(인건비 2.7, 운영비 등 2.4) ※ 도비 100%
- 주요사무
 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
 -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 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사업
 -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대응 사업
 - 그 밖의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5. 검토의견

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4조¹⁾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4조²⁾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
○ 종합의견

- 수도권정비계획법(1983. 7. 1. 시행)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2004. 4. 1. 시행) 제정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나, 현재까지도 인구·경제·교육 등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.

※ 전체인구 5,107만명 중 49.5%, GRDP 1,485억원 중 48.8%, 전국 20대 학의 80%, 의료기관 51%, 정부투자기관 89%,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중 122석

1)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운영의 위탁)

-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.
-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.

2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~ ② (생략)
-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- ④ (생략)

- 또한, 20년이 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경제력의 지방분산, 행정과 재정의 분권, 교육과 문화의 분권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, 중앙집권적 형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,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, 지역전략산업의 육성,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, 국가정책 대응, 민간교류·협력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행정, 정치권 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성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, 공정성, 투명성,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,
- 또한, 수탁기관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성과 및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